

**신이문2역세권(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25.12.05.)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7호(2026.01.29.)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	증) 18,004.0	18,004.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18,004.0	18,004.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862.5	862.5	4.8	-
	도 로	-	증)862.5	862.5	4.8	-
획 지	획지 1	-	증)17,141.5	17,141.5	9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8,004.0	-	18,004.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004.0	감)17,141.5	862.5	4.8
	준주거지역	-	증)17,141.5	17,141.5	95.2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m ²)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 지역	17,141.5	500% 이하	· 신이문역 1차역세권 지역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5.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7.44% (= 536,917,900 천원 - 410,148,106 천원) ÷ 117,989,448 천원)				
	항목				금액(천원)
	총수입	분양주택	소유자		184,008,900
			일반		299,734,400
		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44세대	11,855,000
			장기전세주택	232세대	34,188,000
		보류지			756,600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	6,375,000
	합계				536,917,900
	총 지출				410,148,106
	종전자산 총액				117,989,448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28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76	일반도로	-	서고제264호 (19.08.08)	-
변경	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58 (30)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33	일반도로	-	-	종점 연장
기정	소로	1	2	2.5~10	국지도로	140	이문동 170-130	이문동 170-44	일반도로	-	서고제278호 (24.06.13)	-
변경	중로	2	(1)	15 (2~5)	국지도로	140	이문동 170-130	이문동 170-44	일반도로	-	-	폭원 확장
기정	소로	3	A	8	국지도로	277	이문동 138	이문동 163-76	일반도로	-	서고제264호 (19.08.08)	구역외 서측
기정	소로	2	8	9	국지도로	45	이문동 176-1	이문동 176-71	일반 도로	-	1992.09.28. (서고 305)	구역외 북측 지하차도

※ ()는 구역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A	소로1-A	· 변경 - 연장 : 228m → 258m(30m)	·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연장 변경(구역내 30m)
소로1-2	중로2-(1)	· 변경 - 폭원 : 2.5~10m → 15m(2~5m)	·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 확대

※ ()는 구역내 수치임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공공공지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번지 일대	167.0	감)167.0	-	동대문구고시 제2017-27호 (2017.04.13)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 폐지	· 구역내 협소한 공공공지 폐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비고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내	300.00	법정 : 52.35m²
공동이용시설	소계		3,246.70	법정 : 2,365.62m²
	경로당	획지 내	354.33	법정 : 330m²
	주민운동시설 (옥내)	획지 내	608.08	-
	주민운동시설 (옥외)	획지 내	150.00	-
	다목적실	획지 내	200.00	-
	주민공동시설	획지 내	350.00	-
	어린이집	획지 내	408.29	법정 : 330m²
	어린이놀이터	획지 내	600.00	옥외 설치
	작은도서관	획지 내	426.00	법정 : 158m²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내	150.00	법정 : 66m²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에 따라 1,000세대 미만의 경우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25 이상 확보

= (757세대×2.5㎡)×1.25 = 2,365.62㎡ 이상 < 3,246.70㎡ 계획

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8,004	획지1	17,141.5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146	-	-	146	-	-

2) 건축시설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8,004	획지1	17,141.5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439.99% 이하	106m, 36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757세대 (일반분양 481세대, 재개발임대 44세대, 장기전세 232세대)							
		구분(전용면적)			계	조합/분양	재개발임대	장기전세	
		합 계			757	481	44	232	
		공동 주택	39.99㎡형		81	54	27	-	
			49.99㎡형		108	53	-	55	
			59.98㎡형		200	100	17	83	
			84.97㎡형		222	128	-	94	
			114.99㎡형		146	146	-	-	
심의완화 사항		·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241.57%) ※ 상한용적률 198.42% → 법적상한용적률 439.99%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3m : 대지경계부 도로변 · 9m : 지하철1호선 철도변							
기타 사항 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서측 소로3-A변 2m, 북측도로변 3m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서측 소로3-A변 1m							
	쌈지형 공지	· 신이문역 4번출입구앞 위치 지정 - 면적 300㎡이상, 북측도로에 접하는 길이 15m이상							
	공공보행통로	· 1호선 경원선변 공공보행통로(폭원6m)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등)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A)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C)
			소계	도로	임대주택 기부채납			
					환산부지	토지지분		
	18,004.0	17,414.5	862.5	862.5	-	-	100.0	178.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584.5㎡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A)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B)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C) = 862.5㎡ - 100.0㎡ - 178.0㎡ = 584.5㎡							
기준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190% (※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상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0.7×α현금) = 190%× (1 + 1.3×1.0×0.03409) = 198.42% = 198.42% 이하							
	가중치	· 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90%/190%) = 1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584.5㎡ ÷ (18,004.0㎡ - 862.5㎡) = 0.03409						
	α건축물	· 해당없음						
법적 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439.99% (계획용적률 : 439.99%)							
	구분	적용 기준			계획내용			
	서울형 주거 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 벽체 부분 설치		
		친환경 건축물	환경 성능 부문			· 녹색건축 그린1등급(최우수) 이상 획득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획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추가 적용			·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 에너지 인증 5등급 적용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		
		역사문화 보전	지정등록 문화재 포함 역사생활문화유산 포함 등			· 해당없음		
		커뮤니티 지원시설	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이상(권장)			· 해당없음		
	기타	지하철 관련시설 등 설치			· 해당없음			

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1)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정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정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757세대 - 232세대 - 232세대 = 293세대 ·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계획 - 세대수의 15%이상 : 293세대 × 15% = 43.95세대 이상 → 총 44세대 계획(※전용 39.99㎡형 27세대, 전용 59.98㎡형 17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법정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44세대 × 30% = 13.2세대, 293세대 × 5% = 14.7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27세대(61.4%)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계	44세대	5.82%	100.0%
전용 39.99㎡	27세대	3.57%	61.37%
전용 59.98㎡	17세대	2.25%	38.63%

(2) 공공주택(장기전세) 계획

계획 기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3-1-1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439.99\% - 198.42\%)/2 = 120.785\%$				
산출 근거	· $126.785\%(\text{완화용적률}) \times 17,141.5\text{㎡}(\text{대지면적}) = 20,704.36\text{㎡}(\text{기준})$				
건립 규모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 계	-	-	232세대	20,706.85	> 20,704.36㎡
40㎡이하	39.99	54.03	-	-	기준이상
40㎡초과~50㎡이하	44.99	60.90	55세대	3,349.63	
50㎡초과~60㎡이하	59.98	80.94	83세대	6,718.14	
60㎡초과~85㎡이하	84.97	113.18	94세대	10,639.08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토지이용	·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녹지공간 최대 확보	-
	대 기 질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인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
	수 질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폐 기 물	·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 지구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
	소음,진동	·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내에 녹지 최대확보	-
재난방지	· 피난 및 응급차량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대상지는 호우 침수 피해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해당되지 않음		-

※ 호우 침수피해지역은 서울안전누리(<https://seoul.go.kr/index.do>) 참고

9.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증) 450세대 (현황 : 307세대 → 계획 : 757세대)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북측	이문유치원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 대상지는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음	-
	이문초등학교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내용	비 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방법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방법 등 CCTV 설치 · CCTV 및 방법 등의 설치 위치는 주민 요청 및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선정	-

※ 세부 설계지침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m²)	획 지			비 고
			명칭	위 치	면 적(m²)	
신규	1	18,004.0	획지1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17,14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 환경성 검토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생태면적률	30%	○	· 사업시행후 : 30.03% 계획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 · 지반녹지 등 적용	
	2.녹지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 수공간 및 조경녹지 확보로 연결성 확보	· 조경계획에 반영	
	3.지형변동	지형변동 최소화	○	· 지형변화는 미미함 · 토양포장율의 변화 예상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 · 포장면은 투수성 포장재 사용	
	4.비오톱	5등급	○	· 개별 비오톱유형평가는 평가 제외 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지역	· 생물서식공간 마련 · 지구내부에 조경 및 녹지 조성	
생활 환경	5.일조	수인한도 만족	△	· 사업지구 주변 일조영향대 지역의 발생 예상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6.바람 및 기후	바람길 확보	○	· 신축건물에 의한 바람길 영향 발생하나 그 영향은 미미함	· 지구내부에 녹지공간 확보	
	7.에너지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	· LNG 사용계획	·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 기법을 최대한 반영	
	8.경관	Skyline 보전	○	· 대상지는 지상35층의 높이로 계획하여 대상 지 북측으로 대림e편한세상아파트(최고22층), 서측으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등 가로변 건축 물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 스카이라인 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변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 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계획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경관변화	○	· 기존 건축물 및 기존경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하여 시각적 경관영향은 긍정적임	·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조화를 위하여 색체계획은 기 단부, 중층부, 상층부의 전통적인 3단 구성방식을 채 택	
		녹지공간	○	· 계획지구는 공동주택용지로 생태면적률을 법적기준(30%이상) 이상으로 계획함	· 계획지구내 다양한 조경시설 및 수목식재 계획함 · 광역적 그린네트워크(녹지축)를 도모함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 간 최대확보	○	· 동대문구에는 문화공간 11개 소, 공원 248개 소, 체육시설 5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지구 내 공공공지, 어린이놀이터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 식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임	
	10.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 계획지구 내 내부도로는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어 보행자 전용등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 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이 용되는 도로가 대 부분임	· 계획지구 내부로는 쾌적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주 변 주거지와 연계하는 단지 내 도로를 중심으로 생 활 활동축을 구축할 계획임	
추가	11.대기질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 물질(PM-10, NO2)발생 예상 됨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치,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회전 금지, 필요시 방진 망설치 등 · 운영시 환경정화수중 식재 등	
	12.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 활폐기물 발생 ·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인근 정비소 이용과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3.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및 소음환경기준	○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발생	· 가설방음판넬설치 · 투입장비 제한 · 작업시간 조절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	증) 18,004.0	18,004.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8,004.0	-	18,004.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004.0	감)17,141.5	862.5	4.8
	준주거지역	-	증)17,141.5	17,141.5	95.2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28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76	일반도로	-	서고제264호 (19.08.08)	-
변경	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58 (30)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33	일반도로	-	-	종점 연장
기정	소로	1	2	2.5~10	국지도로	140	이문동 170-130	이문동 170-44	일반도로	-	서고제278호 (24.06.13)	-
변경	중로	2	(1)	15 (2~5)	국지도로	140	이문동 170-130	이문동 170-44	일반도로	-	-	폭원 확장
기정	소로	3	A	8	국지도로	277	이문동 138	이문동 163-76	일반도로	-	서고제264호 (19.08.08)	구역외 서측
기정	소로	2	8	9	국지도로	45	이문동 176-1	이문동 176-71	일반 도로	-	1992.09.28. (서고 305)	구역외 북측 지하차도

※ ()는 구역내 수치임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공공공지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번지 일대	167.0	감)167.0	-	동대문구고시 제2017-27호 (2017.04.13)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m ²)	획 지			비 고
			명칭	위 치	면 적(m ²)	
신규	1	18,004.0	획지1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17,14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의 용도·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안의 부대시설·복리시설	허용용도는 주된용도임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구 분	가 구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설	획지1	준주거지역	60% 이하	-

(2) 용적률 계획

구 분	가 구	용적률			비 고
		기 준	상 한	법적상한	
신설	획지1	190.0%	198.42%	439.99% 이하	-

■ 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 분	용적률완화		비 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신설	8.42%(584.5m ²)	-	총 8.42%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 분	용적률완화		비 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완화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 × 1/2이상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 필수 ①지속가능형 공동주택 ②친환경건축물 ③역사문화 보전 권장 ④커뮤니티지원시설 설치	
신설	241.57%		총 241.57%

(3) 높이 계획

구 분	가 구	지 역	높 이	비 고
신설	획지1	준주거지역	최고 106m 이하, 36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대지경계부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
		지하철1호선 철도변	건축한계선 : 9m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전면공지	북측도로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3m	도면참조
		서측 소로3-A번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1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2m	도면참조
	삼지형공지	신이문역 4번출입구 앞	면적 300㎡이상, 북측도로에 접하는 길이 15m이상	-

나. 대지내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공공보행통로	· 보행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1개소 확보 - 1호선 경원선변 폭원 6m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동대문구청장)	지역권 설정

다.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생태면적률	30%	○	· 사업시행후 : 30.03% 계획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 · 지반녹지 등 적용	
	2.녹지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 수공간 및 조경녹지 확보로 연결성 확보	· 조경계획에 반영	
	3.지형변동	지형변동 최소화	○	· 지형변화는 미미함 · 토양포장율의 변화 예상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 · 포장면은 투수성 포장재 사용	
	4.비오톱	5등급	○	· 개별 비오톱유형평가는 평가 제외 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지역	· 생물서식공간 마련 · 지구내부에 조정 및 녹지 조성	
생활 환경	5.일조	수인한도 만족	△	· 사업지구 주변 일조영향대 지역의 발생 예상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6.바람 및 기후	바람길 확보	○	· 신축건물에 의한 바람길 영향 발생하나 그 영향은 미미함	· 지구내부에 녹지공간 확보	
	7.에너지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	· LNG 사용계획	·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 기법을 최대한 반영	
	8.경관	Skyline 보전	○	· 대상지는 지상35층의 높이로 계획하여 대상 지 북측으로 대림e편한세상아파트(최고22층), 서측으로 이문위경재정비촉진지구 등 가로변 건축 물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 스카이라인 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변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 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계획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경관변화	○	· 기존 건축물 및 기존경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하여 시각적 경관영향은 긍정적임	·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조화를 위하여 색채계획은 기 단부, 중층부, 상층부의 전통적인 3단 구성방식을 채 택	
		녹지공간	○	· 계획지구는 공동주택용지로 생태면적률을 법적기준(30%이상) 이상으로 계획함	· 계획지구내 다양한 조정시설 및 수목식재 계획함 · 광역적 그린네트워크(녹지축)를 도모함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 간 최대확보	○	· 동대문구에는 문화공간 11개 소, 공원 248개 소, 체육시설 5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지구 내 공공공지, 어린이놀이터 등 조정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 식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임	
	10.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 계획지구 내 내부도로는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어 보행자 전용동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 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이 용되는 도로가 대 부분임	· 계획지구 내부로는 쾌적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주 변 주거지와 연계하는 단지 내 도로를 중심으로 생 활 활동축을 구축할 계획임	
추가	11.대기질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 물질(PM-10, NO2)발생 예상 됨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치,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회전 금지, 필요시 방진 망설치 등 · 운영시 환경정화수중 식재 등	
	12.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 활폐기물 발생 ·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인근 정비소 이용과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3.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및 소음환경기준	○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발생	· 가설방음판넬설치 · 투입장비 제한 · 작업시간 조절	

라.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정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정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757세대 - 232세대 - 232세대 = 293세대 ·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계획 - 세대수의 15%이상 : 293세대 × 15% = 43.95세대 이상 → 총 44세대 계획(※전용 39.99㎡형 27세대, 전용 59.98㎡형 17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법정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44세대 × 30% = 13.2세대, 293세대 × 5% = 14.7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27세대(61.4%)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계	44세대	5.82%	100.0%
전용 39.99㎡	27세대	3.57%	61.37%
전용 59.98㎡	17세대	2.25%	38.63%

(2) 공공주택(장기전세) 계획

계획 기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3-1-1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439.99% - 198.42%)/2 = 120.785%				
산출 근거	· 126.785%(완화용적률) × 17,141.5㎡(대지면적) = 20,704.36㎡(기준)				
건립 규모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 계	-	-	232세대	20,706.85	> 20,704.36㎡
40㎡이하	39.99	54.03	-	-	기준이상
40㎡초과~50㎡이하	44.99	60.90	55세대	3,349.63	
50㎡초과~60㎡이하	59.98	80.94	83세대	6,718.14	
60㎡초과~85㎡이하	84.97	113.18	94세대	10,639.08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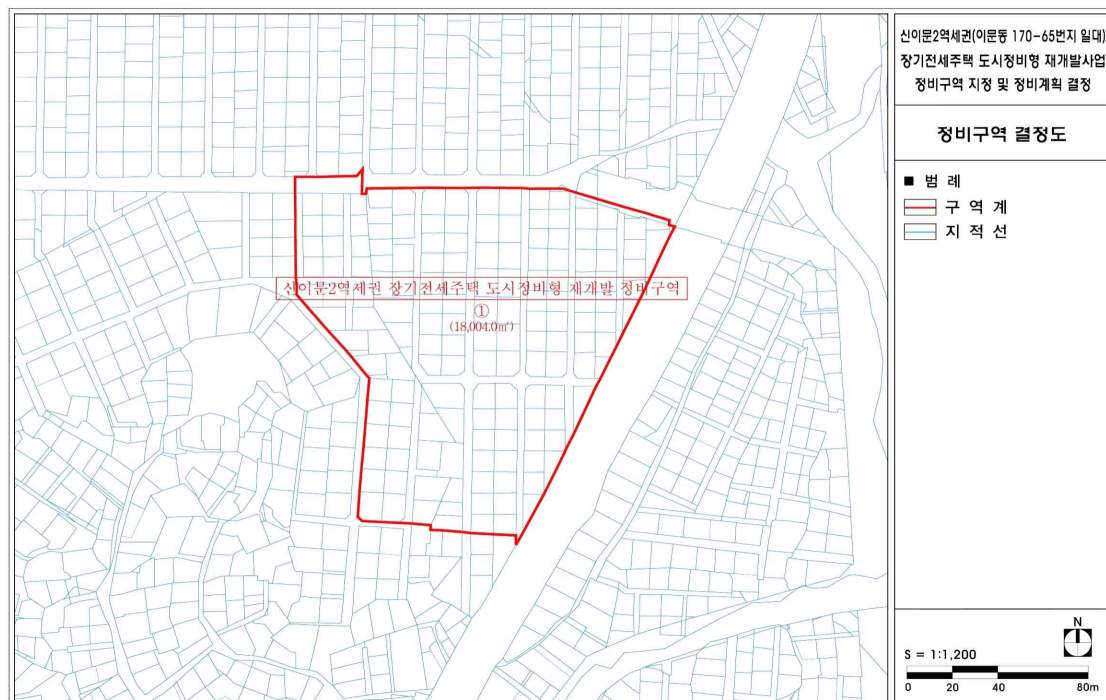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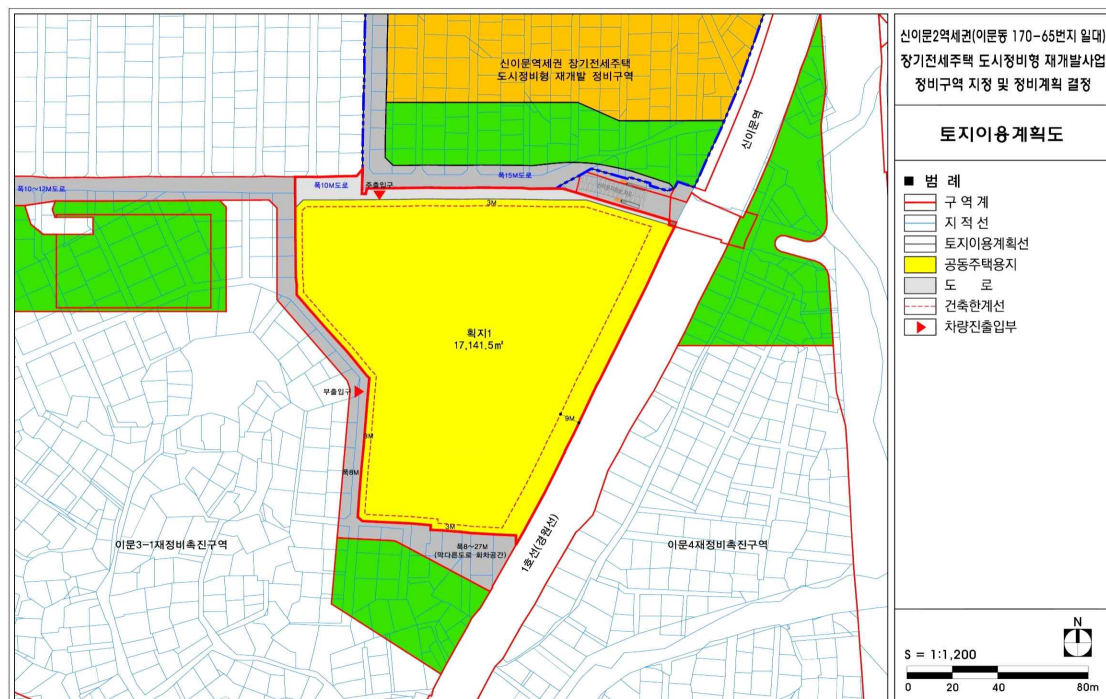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59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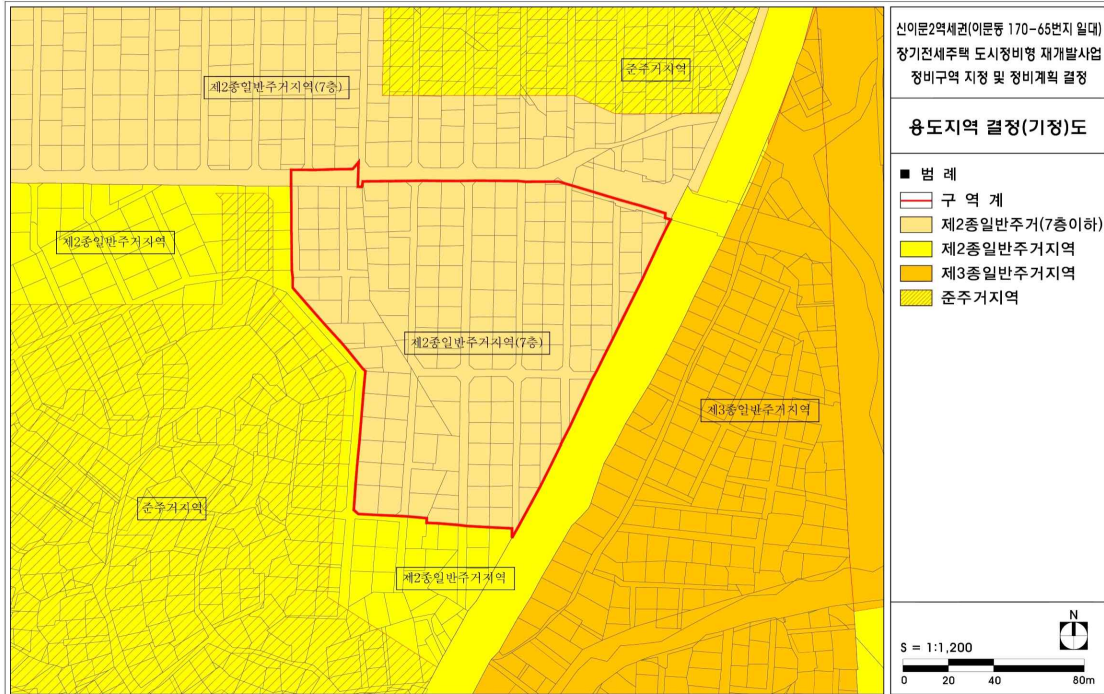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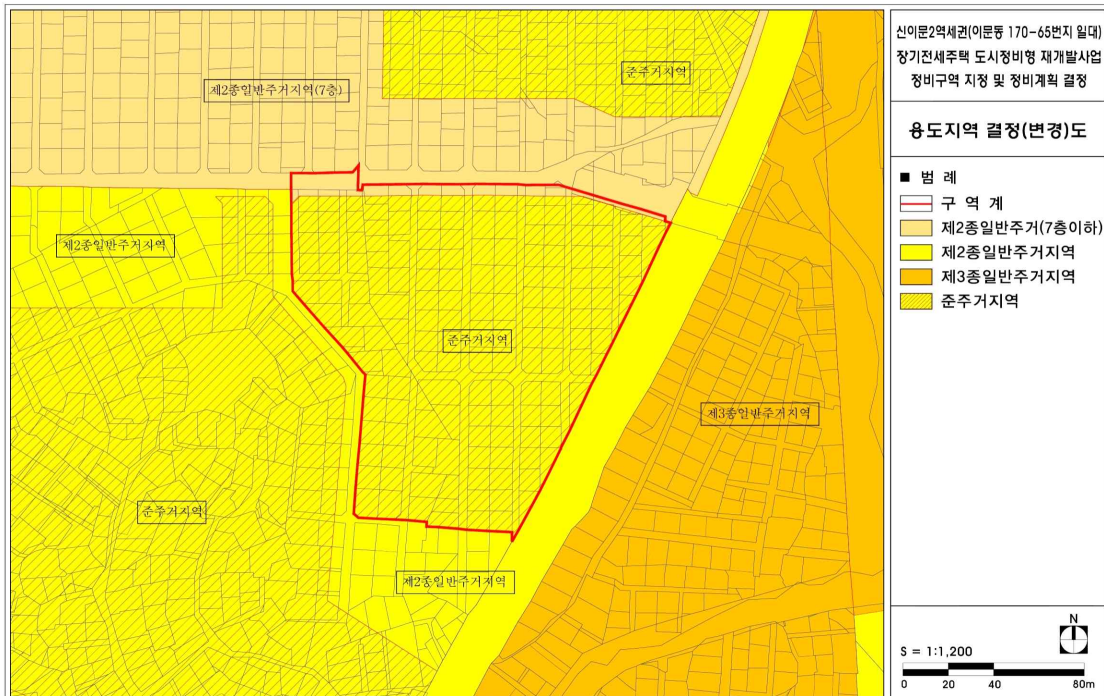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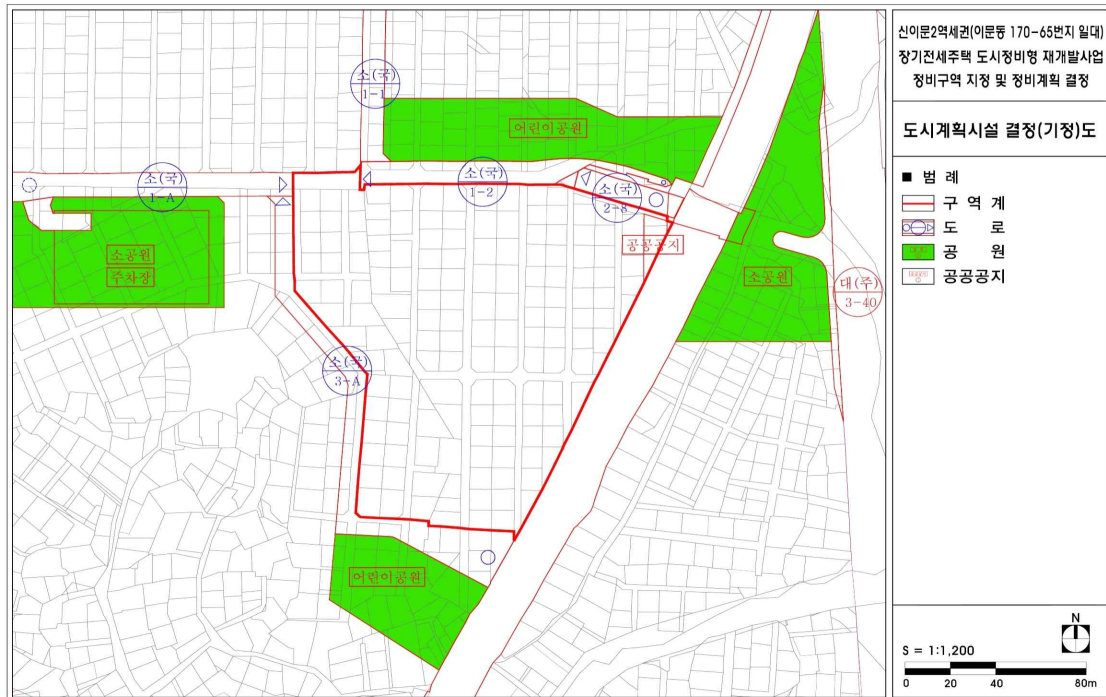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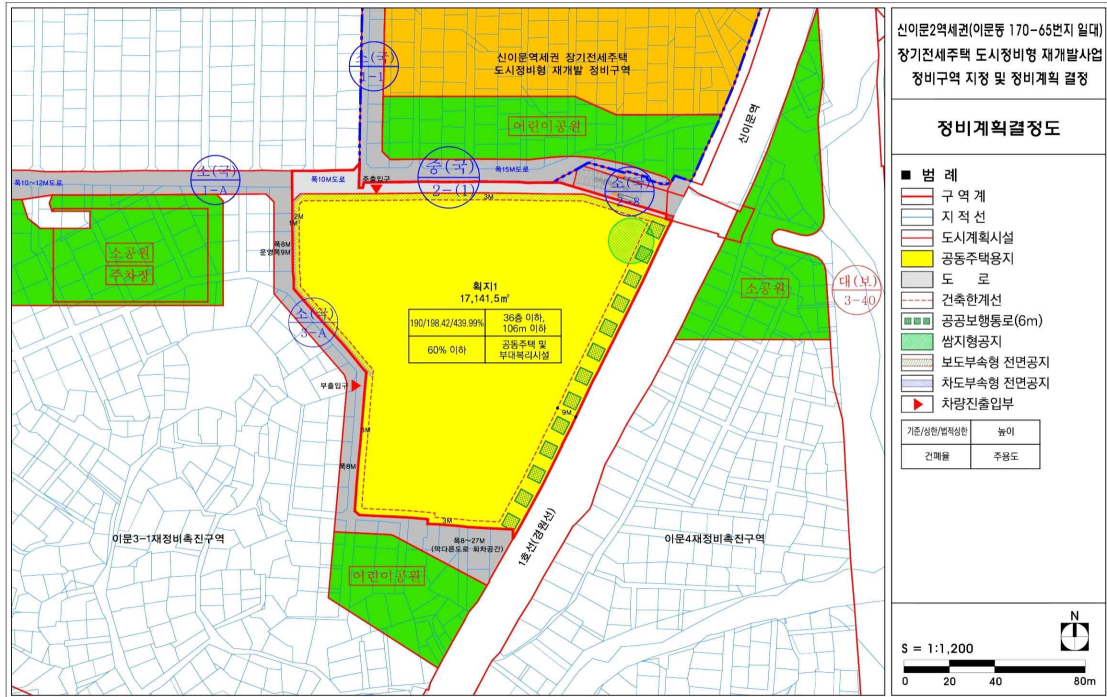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